

<공고번호 제 2022 - 14 호>

2022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전북지역 전략 산업분야와 미래 혁신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에게 창업공간과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하여 미래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26명(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2년 2월 25일(금) ~ 3월 18일(금) 23시까지
- 지원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12월(창업공간은 협약일부터 '22.12월까지 제공)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내외(시제품제작비 포함)
 - (창업공간) 오픈스페이스 또는 집중 보육 공간 제공/1인 1책상
 - (교육 및 멘토링) 전문교육 약 10시간, 멘토링 최대 10회 지원
- 신청주소 : <http://event.jbci.or.kr>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플랫폼 → 2022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신청하기 → 다운로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문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063-220-8939, 8933)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82년 2월 25일 이후 출생)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21년 2월 25일 이후 등록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 법인사업자 :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 기준

□ 신청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 ⑤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가능)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표등본
 - 기창업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폐업증명원(폐업사실이 있을 경우)
- * 사실증명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기창업자 :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예비창업자 :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⑦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 각종 인증서, 국내외 특허 및 규격, 수상 실적 등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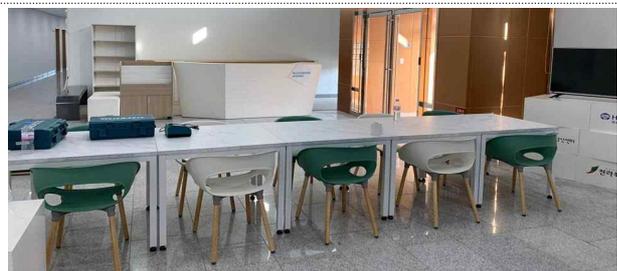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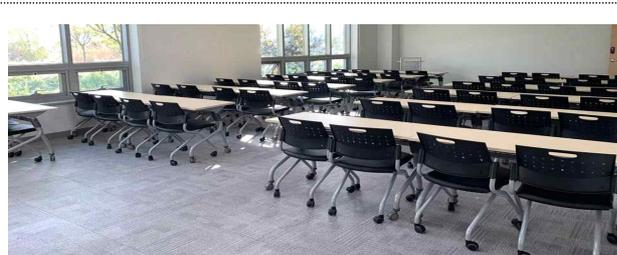
□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포함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항목	내용
외주용역비	자체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시제품제작비)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재료비	재료·원료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비용
기자재 임차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비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창업 보육시설 제외)
회계 감사비	기업 당 200천원 필수 계상

□ 창업공간제공

- 오픈스페이스 또는 집중 보육 공간(1인 1책상 제공) 지원
- 휴게 공간, 세미나실, 강의장(50명 수용), 사무복합기, 정수기 등 편의시설 제공
- 협약일부터 12월까지 입주비 및 관리비 무상 제공

< 창업공간 사진 >



□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 최종선정자에게 온/오프라인교육(10H),
창업기업 네트워킹, 창업캠프 등 운영

3

선정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요건 검토	서류 평가	발표평가	선정 및 협약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가자 모집, 접수	사전 서류검토 및 증빙자료 보완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대상 기업 선정 및 협약
2.25.~3.18.	3.21.~3.23.	3.24.	3.29.	4.1.~

※ 상기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26명(개사) 내외 선발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은 온라인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지원규모의 1.2~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5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반드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가 참석해야 함.(불참 시 선정 제외)

□ 평가지표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단위 : 점)	
1. 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10	100
	1-2.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0	
2. 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	
	2-2.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20	
3. 성장전략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20	
4. 팀 구성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5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면접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 대상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침 및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와 수행기관이 정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참고 1】**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1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창업인정 기준 진단표(폐업 해당시)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자가진단 (○표시)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3】

사실증명원 발급방법(국세청)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3. 사실증명발급신청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한 번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자
 기창업자 또는 폐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 1회 이상 창업이력이 있는 자

사실증명발급신청 세무대리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 사실증명발급

민원사무명	발급신청	이용목적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구분	공민인증서 여부	이용시간
사실증명(채납내역)	신청하기	채납 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신청하기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하기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신청하기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신청하기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사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신청하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건물계좌계설여부)	신청하기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계좌계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폐업지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신청하기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실증명(개발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신청하기	수출물품에 대한 개발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 09:00 ~ 24:00
 ※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는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발급하는 증명이므로 공공하신 사항은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증명서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 : 민원증명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달람 : 민원증명발급 신청결과를 화면상으로도만 조회하는 방법으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참고 4】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국세청)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모범납세자증명
- 취업후학자금상환_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필수입력정보 작성 → 신청하기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10 납부할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I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

기본 인적 사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마스킹]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010 ▾ - [] - []		
이메일	[] @ gmail.com	gmail.com ▾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881111-*****)
* 주소 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수령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input type="radio"/> 인터넷열람(화면조회)
* 발급희망수량	1 ▾ 매

* 발급유형	<input checked="" type="radio"/> 한글증명 <input type="radio"/> 영문증명
* 사용목적	<input checked="" type="radio"/> 대금수령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해외이주
* 제출처	[선택] ▾ ※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본 2매(변경가능)
신청일	2019-08-19

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3A%2F%2Fsearch.n... 

4.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 증명서 확인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접수일자는 최근 1년간 일주일단위로 조회가능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프린터 테스트]를 수행하면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일자 2019-08-17 ~ 2019-08-19 민원사무명 [] 조회하기

* 총 1 건의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있습니다. [출력 무변동]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페이지 하단 자료실의 55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접수방법	처리상태	접수일시	발급수량	발급번호	영문신청여부	비고
1	516-2019-2-501551	납세증명서(기타용)	인터넷	처리완료	2019-08-19 16:45:00	2/2	1829-9724-145	국문	발급

1 / 총1건(1/1)

【참고 5】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민원24)

1. 민원24포털사이트 접속(<http://www.minwon.go.kr>)



2.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정보 작성 후 신청

지방세납세증명신청			
납세의무자			
구분*	개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전체표기 <input type="radio"/> 일부표기
개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18- - - - -
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 제주특별자치도	
	상세주소	호	
현사업장	기본주소	주소검색	
	상세주소		
전화번호*	010 - - - - -		
사업의종류	검색		
신청내용			
증명서사용목적*	그 밖의 목적	은행제출	
수령방법			
수령방법*	검색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수령/제출기관 선택	검색
발급부수*	1부		
신청일	2019년 08월 19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전체선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합니다.

-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저장은 회원은 일주일동안, 비회원은 브라우저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